

왜 기본소득인가? 경제의 명령과 도덕적 선택

WHY BASIC INCOME? ECONOMIC IMPERATIVES AND
MORAL CHOICES

로버르트 판 데어 펜(Robert van der Veen), 암스테르담대학교 정치학부

세미나 ‘유럽에서 기본소득은 어떻게 실험되는가(How to experiment basic income in Europe)?’의 사전강연 자료, 2017년 3월 30일, 연세대학교

번역: 박선미

강연 개요

1. 기본소득의 바람직함: 아래에 관한 규범적 경제적 찬반 주장들

1.1. 공산주의

1.2 호혜성

1.3 자유주의적 평등주의(Liberal Egalitarianism)

2. 복지국가의 기본소득 도입: 동등한 최저생활 보장을 고려하는, 부분 기본소득에서 충분한 기본소득까지

1.1 기본소득과 ‘공산주의로의 자본주의적 이행’(1/4)

맑스의 공산주의: Van der Veen and Van Parijs 1986(마지막 슬라이드의 참고 문헌 R1)에서 해석된 대로, 사회적 해방의 점진적 과정

- “생산력” 발전에 대한 예언
- “생산수단 소유권” –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모두에서 추구될 수 있는 - 으로부터 독립됨
- 사회의 노동 조직이 “소외에서 자기실현으로” 바뀐다.
- 사회의 소득 분배가 “기여에서 필요로” 바뀐다.
- **기본소득**은 노동자들의 선택의 자유와 모순되지 않게 이 과정으로 안내하는데 가장 적합한 수단이다.
- 이행의 개념적 최종 지점에서, 기본소득은 일인당 가처분소득과 같다.

1.1 기본소득과 ‘공산주의로의 자본주의적 이행’(2/4)

맑스: 생산력은 물질적 풍요를 낳는다. “노동일의 길이”는 노동 절약적 기술 진보에 의해 단축된다.

- 노동생산성의 증가 > 일인당 생산 증가 > 0 → “생산에서 요구되는 노동의 양” 평균은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한다. 그러나 일자리 없는 성장은 시간이 지날수록, 세금 증가를 통해 조건 없는 기본소득의 수준을 높임으로써 피할 수 있는데, 이것은 부정적(negative) 노동공급 반응들을 야기한다.
- 그렇게 되면, 자발적으로 공급되는 노동의 양은 하향 조정되고, 모두가 “단축된 노동일”의 접근권을 갖을 수 있다.
- 현재 기본소득은 일인당 소득에 비례하여 **튼실하게** 상승할 수 있다. → “필요”에 따라 분배되는 소득의 몫은 “기여”에 따라 분배되는 소득 몫보다 더 많이 커질 수 있다. 즉, “기여에서 필요로”.

1.1 기본소득과 ‘공산주의로의 자본주의적 이행’(3/4)

이행은 양(positive)의 소득 증가와 동시에 음(negative)의 노동시간 증가를 가져온다. 또한, “사람들은 필요한 것들을 더 풍부하게 갖는다”. 그렇게 되면 사회는 더 풍족해지는가?

- 이행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기본소득은 “최저생활” 수준의 기본적 욕구 충족과 같다.
- 기본적 욕구는 일인당 소득과 함께 상승하는 것으로 상정되므로, 기본적 욕구의 포괄범위는 기본소득 수준보다 **덜** 커진다.
- 따라서 모든 사람은 **더 많은 자유시간**(노동에서 벗어난 시간)과 **더 많은 물질적 수단**을 동시에 가지게 되고, 기본적 욕구를 초과하는 “전면적 욕구(all-round needs)”를 분명히 표현하고 발전시키게 된다.

1.1 기본소득과 ‘공산주의로의 자본주의적 이행’(4/4)

- 또한, 꾸준히 오르는 기본소득은 기술진보로 요구되는 더 복잡한 업무를 점진적으로 개선하기 쉽게 해준다. 따라서 줄어드는 “필연의 영역” 내 노동의 질은 갈수록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 이에 따라, 궁극적 공산주의는 (반드시 무한하다고는 할 수 없는) 풍요 상태이고, 여기에서는 “노동이 삶의 주된 욕구(want)가 되기” 때문에 전체 생산은 “필요에 따라” 지속 가능하게 분배될 수 있다.

1.2 기본소득과 호혜성(1/6)

공산주의로의 이행에서 조건 없는 기본소득이 중심을 차지하는 것을, 사회민주주의적 평등주의자들과 사회주의적 평등주의자들은 호혜성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 Jon Elster (1986, R2): “신체가 건강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노동에 의지해 살아가는 것은 불공정하다.” 기본소득은 당연히 “게으른 사람들의 부지런한 사람들에게 대한 착취를 위한 방안”으로 보인다.
- Stuart White (2013, R3): “만일 당신이 같은 시민들의 생산적 기여로 생긴 자원들을 기꺼이 나눠 가지려 한다면, 당신은 보답으로 기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당신에게 기여를 할 능력과 기회가 있다면 말이다.”

1.2 기본소득과 호혜성(2/6)

- 호혜성 반대론은 기본소득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 의무를 무시하도록 명시적으로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정의롭지 않은 제도라는 것이다. 가장 관대하지 않은 판본에서, 그 주장은 호혜성이란 제도들에 작용하는 정의의 경성 제약(hard constraint)임을 전제로 삼는다.
- 호혜성 반대론과 더불어서, 가부장적 반대론도 있다: (지불)노동은 생래적으로 그리고 수단으로서 개인에게 좋다는 반대론인데, 이 반대론은 다양하게 강제적 노동을 정당화한다. 기본소득의 ‘고된 노역 해방’은 이것이 좋음을 무시함으로써 ‘게으른’ 사람들을 부당하게 대우한다.

1.2 기본소득과 호혜성(3/6)

충분한 기본소득이 지속 가능하게 되면, 일반적 최저생활 소득을 조건 없이 지급하는 세금-이전 인센티브 구조 아래에서 과세 가능한 노동이 충분히 광범하게 행해진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반대론을 해결한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의 노동에 의지해서 살아가기로 마음먹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 맥락에서,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몇 가지 고찰들이 잘 알려져 있는데, 그 고찰들은 다음과 같다.

- 기본소득이 개별 노동자들에게 더 큰 협상력(“싫다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하기 때문에, 노동시장의 최저 지점에서 지불노동의 질은 개선된다.

1.2 기본소득과 호혜성(4/6)

- 현행 복지국가들과 달리, 기본소득은 자산심사와 노동심사의 도덕적 비용이 들지 않게 한다. 도덕적 비용이란, 노동과 사회보장에서 취약한 사람들에 대한 지배, “창피한 폭로”, 빈곤층에 부과되는 불균형한 스트레스 등이다. White (R3): 그래서 호혜성 반대론이 타당하다고 해도, 호혜성 반대론은 결정적인 이유가 되지 못한다.
- 기본소득은 가족과 시민사회 내의 보수 없는 노동을 지원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래서 보수를 받는 생산적 활동과 보수를 받지 않는 생산적 활동의 상호 가치 인정을 촉진한다. 또한 기본소득은 새롭게 기술을 장착하고 기술에 투자할 수 있도록, 생산적인 모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 온당하게 보정된 호혜성 반대론은 ‘참여소득(participation income)’을 지지할 수도 있다(Atkinson 1996, R4).

1.2 기본소득과 호혜성(5/6)

자산심사와 노동심사의 더 인간적인 방식, 생산적 복지의 덜 창피한 방식이 있을 수도 있다. 어떤 이상적인 **급진적 사회민주주의** 아래에서, 소득, 노동의 질, 사회적 지위가 덜 불평등한 지불노동 세계가 존재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 **현실에서 존재하는 복지자본주의** 아래에서 모든 이유들을 고려하면 기본소득에 대한 지지가 강력해진다.

그러나, 기본소득은 호혜성 규범들에 비해 **개념적 우선성**이 없지 않는가?

몇몇 자유주의적 평등주의 사상가들(특히 Van Parijs 1997, R5)은 기본소득이 **분배정의(distributive justice)**, 즉 사람들이 사회적 협력에 참여하는 자격들을 정의하는 영역에 속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관점에서, 기본소득은 협력의 부담 및 수혜의 공정한 할당과 관련해서 호혜성 규범의 적절한 배경이 된다. 그렇

1.2 기본소득과 호혜성(6/6)

기 때문에, 그런 호혜성 규범은 - 사적 계약에서, 사회보장이나 교육이라는 공적 영역에서 - **협력의 정의(cooperative justice)**의 요건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조건 없는 소득의 권리와 충돌하지 않는다.

이 주장은 (1) 공정한 제도들의 설계에서, 분배정의는 협력의 정의를 능가하고, (2) 기본소득은 분배정의의 기초요건임을 주장한다. 나는 (1)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이것은 나중에 논의될 것이다. 나는 (2)에 관해서 대체로 판 파레이스와 같은 생각이지만, 몇 가지 중요한 조건들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1.3을 보라.

1.3 기본소득과 자유주의적 평등주의(1/7)

판 파레이스의 최대 기본소득 주장(R6, R7)을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 실질적 자유: 사회경제적 정의의 수용. 운용조건: **개인의 소득-여가 기회 세트**. 최대의 실질적 자유: 사회경제적 정의의 원칙. **조세 수입을 최대로 하고 그 수입을 “동등하게” 분배함**으로써 달성되는가.
- 세금은 현실세계에서 사람들이 불평등하게 접근하는 다양한 **지대 낚는 선물들(rent-bearing gifts)**의 경쟁적 가치를 부분적으로 차지한다. 증여, 유산, 능력급 일자리, 모든 종류의 우연적 요인들이 그런 선물이다. ‘마음에 드는 초등학교 선생님이나 상상력 풍부한 사업파트너를 만나는 일부터 적절한 언어를 배우거나 적절한 때에 적절한 일자리를 위한 팁을 얻는 일까지.’

1.3 기본소득과 자유주의적 평등주의(2/7)

- 세금 수익의 동등한” 분배는 임금 보조금(subsidies and grants)이라는 노동 조건부 계획(work-conditional scheme)과 관련 있을 수도 있고, 기본소득과 관련 있을 수도 있다. 노동 조건부 계획은 기본소득에 비해서 가장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에게 소득을 벌어들이는 기회는 더 많이 제공하고 자유 시간을 소비할 기회는 더 적게 제공한다. →→ 각각의 계획에 부여되는 실질적 자유를 살펴보면, 어느 쪽 계획도 상대 계획보다 우월하지 않는다(상응하는 소득-여가 기회 세트가 압도적으로 우세하지 않다).
- 판 파레이스: 세금 수익을 모든 선물들의 가치의 일부로 여김으로써 세금 수익 분배의 공정한 방식을 찾게 되는데, 여기서 선물들의 가치는 상상 속의 선물 경매로 결정된다.

1.3 기본소득과 자유주의적 평등주의(3/7)

경매에서 기본소득까지의 판 파레이스의 추론은 다음과 같다.

- 선물의 가치를 매기기 위한 경매 절차는 똑같은 양의 토큰을 가지고 입찰하는 기준선에서 시작하며 모든 사람의 선호를 고려한다. 이 절차는 따라서 이 선호들이 유지되는 현실세계에서 불평등하게 분배된 선물들로부터 흘러나오는 총 지대의 값을 공평무사하게 매긴다. 어떤 사람의 선물 선호도 나머지 사람들의 선호보다 더 크게 계산되지 않는다.
- 이런 계량법으로 재분배에 활용 가능한 세금을 표시함으로써, 돈의 합계가 누구에게도 우선 청구권이 없는 지대임을 분명히 나타낸다. 따라서 그 총액을 나눠주는 중립적 방법은 모두에게 똑같아야 하고 사람들의 선호에 무심해야 한다. 이것은 기본소득 옹호론을 입증한다.

1.3 기본소득과 자유주의적 평등주의(4/7)

나의 반대(R7): 지대는 하늘에서 떨어진 만나(Manna)와 같지 않다. 특히,

- 선물 활동을 수행하는 노력을 들인 이후에만 돈과 다른 혜택을 낳는 선물들은 경품들보다 더 낮은 경매가를 받는다. 그래서 **유로 가격들**을 일정한 선물 활동 종류로 계산할 수 있다. 그렇기에, 사람들의 선호가 똑같이 존중받는 공정한 방법은 **선물 활동에 대한 보상과 함께 부분 기본소득이 있는 것이다.**

1.3 기본소득과 자유주의적 평등주의(5/7)

예: 이모의 따분한 다과회들. 단 두 종류의 선물, 즉 세금이 면제된 유산 10,000 유로와 이모의 유산 10,000유로를 가정해보자. 이모의 유산을 받기 위해서는 이모의 다과회에 100번 참석하는 선물 활동을 해야 한다. 인구의 절반은 자신의 토큰을 이모 티켓 2장(20,000유로, 200노동단위)에 쓴다. 나머지 인구 절반은 무료 티켓 1장(10,000유로, 노동 없음)을 구매한다.

- 무료 티켓을 회계단위로 하면, 이모 티켓의 경매가는 $1/2$ 이다. 경매가로 나타낼 경우, 일인당 선물 가치는 $(1 \times 1 + 2 \times 1/2) / 2 = 1$ 과 100노동단위이다. 유로로 표현하면, 일인당 가치는 $(1 \times 10,000 \text{유로} + 2 \times 10,000 \text{유로}) / 2 = 15,000 \text{유로}$ 와 100노동단위이다.

1.3 기본소득과 자유주의적 평등주의(6/7)

- 모두가 일인당 15,000유로의 가치 몫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몫의 현금화는 서로 다르다. 일을 하는 인구 절반은 20,000유로와 200노동단위를 받고, 여가를 좋아하는 인구 절반은 노동 없이 10,000유로를 받는다. 이것과 일인당 유로 가치를 비교하면, **이모 노동의 100단위 가격은 5,000유로이다.**
- 이제 최대 세금 수익이 **실제로 총 경매가의 절반 - 7,500유로와 50노동단위 -** 이라고 가정해보자. 그럴 경우, 모든 사람은 **5,000유로의 부분 기본소득과 수행에 대한 최대 보상인 5,000유로 바우처 가치(이모 노동의 100단위)**를 받아야 한다. 이 단순한 예에서, 이는 최대의 실질적 자유를 얻는 **중립적 방법이다.**

1.3 기본소득과 자유주의적 평등주의(7/7)

제한된 실험 조건하에서, 최대 기본소득은 결국 고유하게 정의로운 이전 시스템일 수 있다. 가령, 노동을 많이 투입하면 기본소득 계획보다 더 높은 수익을 보증하는 '노동 조건부 계획'에서, 가장 덜 혜택받는 사람들은 이득을 볼 만큼 충분하게 노동시간을 공급할 수 없다.

그런 경우, 가장 덜 혜택받는 사람들의 소득-여가 세트는 최대 기본소득일 때가 노동 조건부 계획일 때보다 훨씬 낫다. 사실 이것은 내가 내 논문에서 맞다고 추정한 것이다. Van der Veen 1992, (R9)를 참조.

이 실험의 추정은 생애를 균형적으로 볼 때 세계화 아래에서 현실주의적일 수 있지만, 여기서 “가장 덜 혜택받는 사람들” 집단이 어떻게 정의되느냐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진다. **나의 결론**: 모든 것을 감안할 때, 자유주의적 평등주의 접근법은 기본소득을 정당화하는 데서, 전적인 기여는 아닐지라도, 큰 기여를 한다.

복지국가의 기본소득 도입(1/5)

- “1차 이행”: **공산주의로의 이행을 위한 실험 조건**하에서 최저생활 수준의 기본소득은 지속 가능하게 될 수 있다. 즉, 일인당 소득 및 최저생활 수준의 증가율 < 노동 생산성의 증가, 그래서 부분 기본소득은 충분한 기본소득이 될 수 있다.
- (나 자신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것처럼, 이 예비 이행 단계는 유의미하다. 그러나, **충분한 기본소득이 현재에는 지속 가능하지 않을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확실히 알지 못한다.
- 몇몇 복지국가들에서 부분 기본소득을 제안하고 있다(NL, 1985).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부분 기본소득이 충분한 기본소득으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은 어떻게 되는가?

복지국가의 기본소득 도입(2/5)

- 나의 견해: 우리는 부분 기본소득 – 말하자면, 한 사람의 사회적 최저소득의 절반 – 을 도입하고 난 다음에 이행 기간 – 적어도 10년은 확실히 될 것이다 – 동안 이 수준을 두 배로 올리는 과제를 맞닥뜨리고 있다.
- 이 말의 뜻이, 우리는 그저 경제가 “병약한 풍요상태(weakly abundant)”이길 기다리며 참아야 한다는 것일까? 나의 견해: 아니다! **충분한 기본소득을 위해 극복되어야 할 문제들이 있고, 그 문제들과 적극적으로 헌신적인 싸움을 해야 한다.**
- 이행기 동안, 충분한 기본소득을 위해 요구되는 권한 부여 효과들 (empowerment effects)은 **훨씬 덜 뚜렷하다.** 지불노동과 무보수노동 사이의 더 나은 균형, 저임금 노동자들의 협상력 상승, 소기업 지원, 기술을 새로 습득하고 기술수준을 높이는 기회 등, 이 모든 이점들은 점진적으로 실현된다.

복지국가의 기본소득 도입(3/5)

적어도 전통적 보조금과 사회보험이 온전하게 유지된다면, 행정비용의 절약 또한 부분 기본소득으로는 덜 뚜렷할 것이다. 다양한 선거기간을 거치는 동안, 이 이점들을 중국에는 완전히 얻게 될 것이라는 믿음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 “1차 이행”의 궤적 대부분에서, 유동적인 숙련노동인구와 노령인구가 증가하면서 복지국가의 재분배 방식들은 이미 재정적 긴축 대응에서 재정위기에 이르는 압박을 받고 있다. 이런 불안정은 충분한 기본소득의 중국적 지속 가능성에 대한 믿음이 지속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 개인들에게 사회적 최저기준의 절반을 보장하는 부분 기본소득의 재분배 요구는, 복지국가들의 전통적인 빈곤완화 및 기회균등 수단들과 여전히 경쟁할 것인데, 정부 재정으로 이뤄지는 양질의 교육, 문화, 의료 등 그런 수단들은 조건 없는 현금 이전으로 대체될 수 없는 것들이다.

복지국가의 기본소득 도입(4/5)

- 따라서, 복지국가의 현물 공급은 도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지켜내야 할 가치가 있다는 점, 그리고 부분 기본소득에서 충분한 기본소득으로의 현금 수준 이행기를 최소화하려는 시도 속에서 현물 공급과 현금 지급을 교환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빈곤해지는 것을 막는 복지국가의 핵심 방식은 경제성장 이득의 “동등한 배분(equitable sharing)”으로 이뤄져 있다. 예를 들면 (네덜란드에서처럼) 최저생활 소득 수준을 평균 실질임금 수준과 연동시킴으로써 말이다. 연동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최저수준은 일인당 실질 소득의 추세를 대체로 따라야 한다는 합법적 기대가 있다.

복지국가의 기본소득 도입(5/5)

- 그러나, 이것은 그저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한다! 일인당 소득에 비례해 최저생활을 낮춤으로써 이행 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우파 측의 복지국가 개혁가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사회적 해방을 위해 헌신하는 기본소득운동의 개혁가들에게서 저항을 받아야 마땅하다.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전통적 방식의 해방적 복지국가 옹호자들 또한 그런 경향들에 저항할 것이다.
- 그래서 나는, 정치적으로 옳은 행동을 하려는 양식 있는 기본소득 지지자들 (basic income lovers)은 복지국가의 친구들이기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일 그들이 아주 운이 좋다면 여전히 살고 있을 복지국가의 친구들 말이다. 기본소득운동이 실제로 직면하는 과제는 이것임을 기본소득운동은 더 분명히 인지해야 할지도 모른다.

참고문헌(1/2)

1. Elster, Jon. 1986. “Comment on Van der Veen and Van Parijs”, *Theory and Society* 15 (5), 709-21.
2. White, Stuart, 2013. “An Objection can be Valid Without Being Decisive”, Interview by Stanislas Jourdan www.basicincome.org/news , 22 september 2013.
3. Atkinson, Anthony B. 1996b. “The Case for a Participation Income”, *The Political Quarterly* 67, 67-70. Reprinted in Anthology, 435-8.
4. Van Parijs, Philippe. 1997, “Reciprocity and the justification of an unconditional basic income: reply to Stuart White” *Political Studies*, XLV (1997), pp. 327-330.
5. Van Parijs, Philippe. 1995. *Real Freedom For All. What (if anything) Can Justify Capitalis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참고문헌(1/2)

6. Van Parijs, Philippe. 2009. “Basic Income and Social Justice: Why Philosophers Disagree”, York University: Joseph Rowntree Foundation *Annual Lecture*.
7. van der Veen, Robert. 2011. “Why auntie's boring tea parties matter for the fair distribution of gifts”, in Axel Gosseries and Yannick Vanderborght, eds., *Arguing about Justice. Essays for Philippe Van Parijs*, Louvain-la-Neuve: Presses Universitaires de Louvain, 329-339.
8. van der Veen, Robert. 2010. “Basic income as unconditional subsistence: desirability and obstacle.” *Introductory lecture*, 13th BIEN International Conference, Faculty of Economics and Public Administration, São Paulo, 30 June.
9. van der Veen, Robert J. 1992. *Between Exploitation and Communism. Explorations in the Marxian theory of justice and freedom*. Groningen: Wolters.